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 중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	보 도 자 료
전문공보담당자 검사 우만우 전화 031-880-4303 / 팩스 031-880-4560	2020. 2. 4.(화)

제 목	‘찬물 욕조’ 아동학대·사망 사건 구속 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 (제11조 제1항)

☑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(제11조 제2항 제3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-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(지청장 송경호)은 ’20. 1. 10. 지적장애 3급의 의붓아들(8세)을 찬물 욕조에 들어가게 한 후 수시간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아동학대·사망 사건 관련하여 피해아동의 계모 A를 구속 기소하였음
-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임

1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- **피고인**

- A(여, 31세, 피해아동의 계모)

- **공소사실 요지**

- ’20. 1. 10. 09:30경 피해아동을 베란다 찬물 욕조(온도 : 베란다 9℃, 욕조 7℃)에 약 2시간 동안 들어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학대하여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함

☞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치사)

- ’19. 7. ~ ’20. 1. 9.경 총 8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뺨을 때리거나 밀어 넘어뜨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함

☞ **아동복지법위반(상습아동학대)**

2 수사 경과

- ’20. 1. 10. 피해아동 사망
- ’20. 1. 12. A 구속
- ’20. 1. 17. 여주경찰서 사건송치
- ’20. 1. 18. ~ 2. 3. 피고인·참고인 조사, 진료내역 분석, 의료자문 의뢰 등
- ’20. 2. 4. A 구속 기소

3 수사 결과

- 휴대폰 포렌식, 피해아동 진료내역 전수조사, 아동보호기관 상담자료 분석, 의료자문의뢰 등 면밀히 수사한 결과,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폭행, 학대하여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,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치사)죄로 구속기소 하였음 ▨